

건설업 교육 안내

건전한 건설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기업 윤리경영 및 건설 산업 관련 법규 등에 관한 **건설업 교육제도가 신설(2016.2.11)**됨에 따라 **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**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**건설업 교육을 실시**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교육 대상

- **건설업 신규등록자(추가 업종등록 제외) [의무사항]**
 - 2016. 2. 12이후 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
→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
 - ※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 이수 시
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**영업정지처분 이후 정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[의무사항]**
 - 2016. 2. 12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
→ 영업정지 기간 내
 - ※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: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
 - ※ 법인 대표자 수료시 15일, 등기부상 임원 수료시 1인당 5일 감경 (최대 3인)
- **교육 참석 대상자**
 - 법인 :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
 - 개인 : 대표자

□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

교육 과정	교육 내용	시간
건설업자 윤리경영	○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	1.5H
건설산업 관련법규	○ 건설산업기본법, 하도급법, 계약법	4.5H
건설공사 안전관리	○ 건설공사의 품질, 안전 및 환경관리 등	2H

※ 교육시간 : 1일 8시간 집체교육 (09:00 ~ 18:00)

※ 교육 관련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[시행일 : 2016. 2. 11]

- ① 건설업을 등록한 자(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)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.

※ 행정처분 관련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[과태료] 제12호

건설업을 신규등록 한 자가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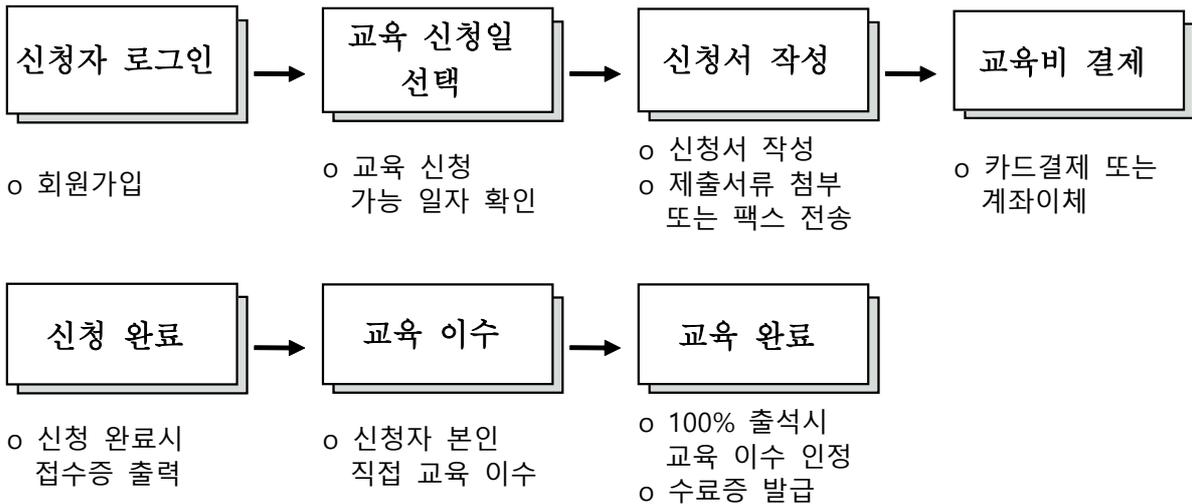
□ 교육일정

구분	12월
개설 일자	1일(대전)
	12일(서울)
	22일(대구)
	28일(창원)

□ 교육장소

지역	교육장소
서울	○ 전문건설회관 [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(신대방동) / 2층 회의실]
광주	○ 광주전문건설회관 [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80 (치평동) / 전문건설회관 2층]
대전	○ 청소년위캔센터 [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/ 지하1층]
부산	○ 부산교원빌딩 [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16 / 지하2층 대교육장]
대구	○ 대구전문건설회관 [대구시 동구 화랑로 47 (신천4동) / 전문건설회관 7층]
전북	○ 전주상공회의소 [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(전동) / 5층]
경남	○ 늘푸른전당 [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(삼동동) / 2층]
제주	○ 제주상공회의소 [제주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-4(도남동) / 4층 중회의실]
강원	○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[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(우산동) / 지하1층 대강의실]
	○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[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(초당동) / 1층 다목적홀]

□ 교육 신청방법 : 인터넷 신청 (홈페이지 : edu.kosca.or.kr)



□ 교육비 안내

- 교육비 : 150,000원 (교재, 중식포함) ○ 납부방법 :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
- 영수증 발급 :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또는 교육 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행

□ 교육문의 :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(02-3284-1080)

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

기준 : 2016. 2. 12 ~ 2017. 11. 27

시·도회	구분	신규등록	영업정지	시·도회	구분	신규등록	영업정지	
서울	종합	63	31	강원	종합	7	6	
	전문	155	101		전문	42	7	
	계	218	132		계	49	13	
부산	종합	26	11	충북	종합	4	6	
	전문	46	20		전문	43	8	
	계	72	31		계	47	14	
대구	종합	61	6	충남 (세종시포함)	종합	14	11	
	전문	42	7		전문	111	18	
	계	103	13		계	125	29	
인천	종합	14	10	전북	종합	11	11	
	전문	80	24		전문	53	12	
	계	94	34		계	64	23	
광주	종합	19	3	전남	종합	20	11	
	전문	57	2		전문	59	43	
	계	78	5		계	79	54	
대전	종합	7	3	경북	종합	8	15	
	전문	37	7		전문	117	27	
	계	44	10		계	125	42	
울산	종합	4	3	경남	종합	15	4	
	전문	28	7		전문	72	18	
	계	32	10		계	87	22	
경기	종합	188	48	제주	종합	4	8	
	전문	239	96		전문	21	16	
	계	427	142		계	25	24	
						총계	1,669	598

※ 종합 : 토목, 건축, 토목건축, 산업환경설비, 조경공사

※ 전문 : 전문건설업종, 가스시설, 난방, 기계설비, 시설물